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172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변 론 종 결 2021. 10. 26.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3. 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20.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20. 7. 23.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20. 7. 22. ~ 2021. 7. 22.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20. 7. 23.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 1) 피고 C과 피고 D은 2004.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D이 2020. 7. 2. 피고 C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4399)을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인 2020. 9. 25.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 10. 8.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던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새로이 2020. 10. 8. H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억 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 1) 피고 회사는 2020. 11. 4.경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과 관련한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20. 12. 1.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인한 물품대금채무 98,367,919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 당시 구상채무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해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67,919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2020.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3.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구상금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배상).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약정은 2020. 7. 23.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0. 9. 25.로부터 약 1개월이 조금 넘게 경과한 2020. 11. 4.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D은 2004. 11. 3. 피고 C과 혼인한 후, 2020. 12. 8. 이혼조정(서울가정법원 2020년48580)이 성립될 때까지 약 16년간 자녀 2명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 D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D은 피고 C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2020. 7. 2.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자녀들의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을 구하는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이던 2020. 9. 25.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D에게 증여하고 피고 D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채무는 피고 D이 인수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0. 12. 8.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자녀는 14세, 15세로 피고 D이 안정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 D이 인수한 채무 384,807,742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6억 1,500만 원의 1/2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I, J, K에 있는 L건물 M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N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7층 P호 84.90㎡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I 대 16768.2㎡ 2. 서울특별시 중랑구 J 대 13㎡ 3. 서울특별시 중랑구 K 대 14.8㎡ 대지권의종류 : 1, 2, 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6796.00분의 37.23

